|  |  |  |
| --- | --- | --- |
|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  국토자원부령 제71호  <국토자원 행정소송 응소규정>이 2017년 5월 2일 국토자원부 제1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쟝다밍(姜大明)  2017년 5월 8일  제1조 국토자원 행정소송에 대한 응소 업무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치(法治)에 의한 국토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토자원 관리 업무의 경험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토자원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활동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접수 및 심리하는 행정소송 사건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응소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재판을 존중 및 집행하여야 하고 자각적으로 사법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4조 국토자원주관부서의 법제(法制)업무기구는 본 부서의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조직, 조율 및 지도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의 피소(被訴) 행정행위를 행한 업무기구는 응소수행기구로서 해당 행정소송에 대한 응소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이 발송한 응소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법제(法制)업무기구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등기한다. 응소통보서가 기타 업무기구로 발송된 경우 응소통보서를 받은 당일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응소수행기구를 확정하고 응소통보서 및 관련 서류를 응소수행기구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소(被訴) 행정행위가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행위인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업무기구를 응소수행기구로 한다.  (2) 피소(被訴) 행정행위가 재심사에서 유지 결정이 내려진 행정행위인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업무기구와 행정재심사 사항을 처리한 법제(法制)업무기구를 응소수행기구로 한다. 업무기구는 원(原)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 및 답변을 책임지고 법제(法制)업무기구는 재심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 및 답변을 책임진다.  (3) 피소 행정행위가 재심사에서 변경된 행정행위인 경우 재심사 사항을 처리한 법제(法制)업무기구를 응소수행기구로 하고 업무기구는 응소에 협조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피소 행정행위와 연관된 기타 업무기구에 응소 참여를 통보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소수행기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법제(法制)업무기구가 처리의견을 도출한 후 국토주관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7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행정소송 응소와 관련된 사무성 업무를 산하 사업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응소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이 발송한 응소통보서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피소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며 응소수행인력을 확정하고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 및 위임장을 제작하여야 한다.  응소수행기구는 수요에 따라관련 기구, 기관, 법률고문 등을 조직하여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동 논의를 추진할 것을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응소수행기구는 답변서 및 증거,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변서,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 및 위임장에는 국토자원주관부서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추가로 법정대표인의 서명도장을 날인하거나 법정대표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응소수행기구는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이 발송한 응소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답변서, 증거,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증거, 근거 등 관련 자료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이를 명확하게 표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업무인력을 배정하여 면전에서 인민법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고 수령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응소수행기구가 인민법원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제12조 응소수행기구는 응소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해석•설명, 관련 행정절차의 보충•보완, 법정(法定) 직책 적극 이행 등 조치를 통하여 행정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 원고와 소통 및 협상할 수 있다. 단, 사기 또는 협박 등 수단으로 원고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자원주관부서가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인민법원으로부터 행정분쟁 조정을 건의받은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국토자원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당사자와 소통 및 조율하여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공공이익과 연관되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거나 집단적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자의 법정 출두가 분쟁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  (2) 상급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책임자의 법정 출두 및 응소를 건의하였거나 동급 인민정부가 책임자의 법정 출두 및 응소를 요구한 사건;  (3) 인민법원이 서면으로 책임자의 법정 출두 및 응소를 건의한 사건;  (4) 국토자원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건.  전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지체없이 책임자의 법정 출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는 본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업무인력을 지정하여 법정에 출두시켜 응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開廷) 전에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응소수행기구의 책임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여야 한다.  (1)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가 응소수행기구 책임자의 법정 출두를 요구한 사건;  (2)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상소를 제기하였거나 재심을 청구한 사건;  (3) 본 기구의 업무와 법 집행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건.  제16조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인력은 규정된 시간에 법정에 도착하여야 하며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한 사정으로 제때에 법정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전에 인민법원에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인력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정심리 활동에 참가하고 사법절차와 법정의 기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판인원과 기타 소송참가인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 법정심리가 끝난 후 답변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응송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이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행정사건 재판문서는 법제(法制)업무기구가 통일적으로 등기한다. 인민법원의 행정사건 재판문서를 송달받은 기타 업무기구는 재판문서를 송달받은 당일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전달하여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제(法制)업무기구는 행정사건 재판문서를 응소수행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20조 응소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자원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법정(法定) 기한 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상소장 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상소장 또는 재심청구서의 부본을 법제(法制)업무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판 결과와 분석 상황을 본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보고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여러 건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재판 결과를 송달받은 경우 합병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 국토자원주관부서 또는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였거나 재심을 청구한 경우 2심 사건, 재심 사건은 1심 사건, 2심 사건을 수행했던 원(原) 응소수행기구가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의 재판문서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행 의견을 도출하여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행 상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와 동시에 법제(法制)업무기구에 보고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이행 의견에 대하여 관련 인민법원과 논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국토자원주관부서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경우 응소수행기구는 관련 기구와 공동으로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배상금 지급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비용 납부가 필요한 경우 응소수행기구가 관련 기구와 공동으로 처리한다.  제25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인민법원의 사법건의를 송달받은 후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조치, 의견 및 건의를 도출하여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시에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처리건의를 송달받은 경우 연구를 거쳐 60일 내에 처리의견을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규범성문건이 법률•법규•규장과 저촉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규범성문건 또는 관련 규정의 집행을 중단시켜야 하며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 응소수행기구는 행정소송 활동이 종료된 후 사건 자료를 수집, 정리 및 철하여 기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행정소송 응소 상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하고 행정소송 응소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 부서 내부 또는 하급 국토자원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관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행정소송 응소 업무의 수요에 따라 업무인력을 배치•충원하고 업무경비, 장비 및 기타 필요한 업무조건을 갖춤으로써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구 및 능력이 응소 임무와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행정소송 응소지식 교육훈련 제도를 구축하여 집중교육훈련, 재판방청 및 사례연구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인력의 행정소송 응소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응소 업무의 수요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직변호사를 선임하여 국토자원 행정소송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국토자원주관부서는 법정 출두, 인민법원이 접수 및 심리하는 행정소송 사건 지원,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집행, 응소능력 양성 등 법에 의거한 행정소송 응소 직책 이행 상황을 법치국토건설 평가 및 실적 평가 등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지도부 평가, 선진(先進)조직•선진(先進)개인 선정•표창, 간부 임용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응소수행기구의 책임자와 지방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책임자는 연도업무보고 시 법정 출두 및 응소 직책 이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소송 응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뛰어난 실적을 이룬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표창 및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 국토자원주관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려야 한다.  (1) 인민법원의 법률문서를 송달받은 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에 따라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 거증 등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여 응소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업무인력을 위임하여 대리 출정하지도 아니한 경우;  (4)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여야 하는 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5)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로 집행당한 경우;  (6) 법정(法定) 사유가 없는 상황하에서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裁定) 및 조정서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법에 따라 적시에 사법기관의 사법건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부서, 본 조직에 존재하는 위법행정 문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8) 응당히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 제기 또는 재심 청구의 직책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9) 이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35조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규정을 어기고 행정소송 응소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국토자원주관부서가 참여하는 행정배상에 관한 소송 활동과 국토자원부의 국무원 재결(裁決) 사건 회답 사항에 대한 처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  | **国土资源行政应诉规定**  国土资源部令第71号  《国土资源行政应诉规定》已经2017年5月2日国土资源部第1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以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长 姜大明  2017年5月8日  第一条 为规范国土资源行政应诉工作，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全面推进法治国土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法规和国务院有关规定，结合国土资源管理工作实际，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土资源主管部门依法参加行政诉讼活动，适用本规定。  第三条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积极支持人民法院依法受理和审理行政诉讼案件，依法履行出庭应诉职责，尊重并执行人民法院生效裁判，自觉接受司法监督。  第四条 国土资源主管部门的法制工作机构负责组织、协调和指导本部门的行政应诉工作。  国土资源主管部门作出被诉行政行为的工作机构为应诉承办机构，负责承办相应的行政应诉工作。  第五条 国土资源主管部门收到人民法院的应诉通知书后，由法制工作机构负责统一登记。其他工作机构收到应诉通知书的，应当于收到应诉通知书的当日转交法制工作机构。  第六条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依照下列规定确定应诉承办机构，并将应诉通知书及相关材料转交应诉承办机构办理：  （一）被诉的行政行为未经复议的，作出该行政行为的业务工作机构为应诉承办机构；  （二）被诉的行政行为经复议维持的，作出该行政行为的业务工作机构和办理行政复议事项的法制工作机构为应诉承办机构。业务工作机构负责对原行政行为的合法性进行举证和答辩，法制工作机构负责对复议程序的合法性进行举证和答辩；  （三）被诉的行政行为经复议改变的，办理行政复议事项的法制工作机构为应诉承办机构，业务工作机构协助办理。  经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同意，应诉承办机构可以通知与被诉行政行为有关的其他工作机构参与应诉工作。  依照本条第一款规定难以确定应诉承办机构的，由法制工作机构提出处理意见，报请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确定。  第七条 国土资源主管部门可以委托所属事业单位承担有关行政应诉的事务性工作。  第八条 应诉承办机构应当按照人民法院应诉通知书的要求，及时收集整理作出被诉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拟订答辩状，确定应诉承办人员，并制作法定代表人身份证明和授权委托书。  应诉承办机构根据需要，可以提请法制工作机构组织有关机构、单位、法律顾问等对复杂案件进行会商。  第九条 应诉承办机构应当将答辩状及证据、依据等相关材料提交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审查批准。  答辩状、法定代表人身份证明、授权委托书应当加盖国土资源主管部门的印章，授权委托书还应当加盖法人代表签名章或者由法定代表人签字。  第十条 应诉承办机构应当于国土资源主管部门收到人民法院应诉通知书之日起15日内，按照人民法院的要求将答辩状、证据、依据等相关材料提交立案的人民法院。因不可抗力等正当事由导致证据不能按时提供的，应当向人民法院提出申请，经准许后可以延期提供。  证据、依据等相关材料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应诉承办机构应当作出明确标注和说明，安排工作人员当面提交给人民法院，由人民法院指定的人员签收。  第十一条 应诉承办机构认为需要向人民法院申请阅卷的，可以向人民法院提出申请，并按照规定查阅、复制卷宗材料。  第十二条 应诉承办机构收到应诉通知书后，认为能够采取解释说明、补充完善相关行政程序、积极履行法定职责等措施化解行政争议的，应当及时提出具体措施的建议，必要时应当经本部门负责人同意，与人民法院、原告沟通协商，但不得采取欺骗、胁迫等手段迫使原告撤诉。  国土资源主管部门为化解行政争议所采取的措施，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十三条 人民法院建议调解的行政争议，应诉承办机构应当提出协调解决方案，经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批准后，配合人民法院与当事人进行沟通协调。  第十四条 符合下列情形之一的，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应当出庭应诉：  （一）涉及重大公共利益、社会高度关注或者可能引发群体性事件，负责人出庭更有利于化解争议的案件；  （二）上级国土资源主管部门建议或者同级人民政府要求负责人出庭应诉的案件；  （三）人民法院书面建议负责人出庭应诉的案件；  （四）其他对国土资源管理可能产生重大影响的案件。  符合前款规定的，应诉承办机构应当及时提出负责人出庭的具体建议。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确实无法出庭的，应当指定其他工作人员出庭应诉，并按照人民法院的要求，在开庭审理前向人民法院作出书面说明。  第十五条 符合下列情形之一的，应诉承办机构负责人应当出庭应诉：  （一）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要求应诉承办机构负责人出庭的案件；  （二）国土资源主管部门提起上诉或者申请再审的案件；  （三）其他对本机构业务执法标准可能产生重大影响的案件。  第十六条 出庭应诉人员应当按时到庭。未经法庭许可，不得中途退庭。确因特殊情况不能按时出庭的，应当提前告知人民法院并说明事由，经法院许可申请延期。  第十七条 出庭应诉人员应当根据人民法院的要求参加庭审活动，遵守司法程序和法庭纪律，尊重审判人员和其他诉讼参加人。  第十八条 庭审结束后需要补充答辩意见和相关材料的，应诉承办机构应当在人民法院要求的期限内提供。  第十九条 法制工作机构负责统一登记人民法院行政案件裁判文书。其他工作机构收到人民法院行政案件裁判文书的，应当于收到裁判文书的当日转交法制工作机构进行登记，由法制工作机构将行政案件裁判文书转交应诉承办机构。  第二十条 应诉承办机构应当对人民法院裁判文书进行认真研究，认为依法应当提起上诉、申请再审的，经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批准后，于法定期限内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交上诉状或者再审申请书，并将上诉状或者再审申请书抄送法制工作机构。  国土资源主管部门决定不提起上诉的，应诉承办机构应当于人民法院裁判文书生效之日起10日内，将裁判结果及分析情况向本部门负责人报告，同时抄送法制工作机构。因同一原因导致多个案件收到相同裁判结果的，可以合并报告。  第二十一条 国土资源主管部门或者原告提起上诉、申请再审的，第二审案件、再审案件由原承办第一审案件、第二审案件的应诉承办机构负责承办行政应诉工作。  第二十二条 人民法院的裁判文书需要履行的，应诉承办机构应当自判决、裁定和调解书生效之日起10日内提出履行的意见，报经本部门负责人批准后组织实施，并在判决、裁定和调解书生效之日起30日内，向负责人报告履行情况，同时抄送法制工作机构。  依法提出再审申请的，应诉承办机构应当就履行的意见与相关人民法院进行沟通。  第二十三条 人民法院依法判决国土资源主管部门承担赔偿责任的，应诉承办机构应当会同相关机构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制定赔偿方案，经本部门负责人批准后，办理支付赔偿费用手续。  第二十四条 需要缴纳诉讼费用的，由应诉承办机构会同相关机构办理。  第二十五条 国土资源主管部门收到人民法院提出的司法建议的，应当组织研究落实，提出具体措施、意见和建议，对存在的违法或者不当的行政行为进行整改，并将有关情况及时向人民法院反馈。  第二十六条 国土资源主管部门收到人民法院对本部门制定的规范性文件的处理建议的，应当组织研究，于60日内向人民法院反馈处理意见。发现该规范性文件与法律法规规章的规定相抵触的，应当及时停止执行该规范性文件或者相关规定，并向社会公布。  第二十七条 应诉承办机构应当在行政诉讼活动全部结束后，将案件材料进行收集整理装订，依照档案管理的有关规定归档、移交。  第二十八条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定期统计和分析行政应诉情况，总结行政应诉中发现的问题，并在本部门内部或者向下级国土资源主管部门通报，督促其改进管理、完善制度。  第二十九条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根据行政应诉工作需要，配备、充实工作人员，保障工作经费、装备和其他必要的工作条件，保证行政应诉人员、机构和能力与工作任务相适应。  第三十条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建立行政应诉学习培训制度，开展集中培训、旁听庭审和案例研讨等活动，提高工作人员的行政应诉能力。  第三十一条 国土资源主管部门可以根据应诉工作的需要,聘请律师或者安排公职律师办理国土资源行政案件。  第三十二条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将出庭应诉、支持人民法院受理和审理行政案件、执行人民法院生效裁判以及行政应诉能力建设等依法履行行政应诉职责情况纳入法治国土建设考核和绩效考核等，考核结果作为评价领导班子、评先表彰、干部使用的重要依据。  应诉承办机构负责人和地方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人进行年度述职时，应当报告履行出庭应诉职责情况。  第三十三条 对在行政应诉工作中取得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予以表彰和奖励。  第三十四条 国土资源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规定，有下列情形之一，应当责令限期改正；造成不良后果的，应当依法予以处分：  （一）收到人民法院的法律文书后未及时处理或者转交的；  （二）不按照本规定提交证据、依据及其他相关材料，履行答辩、举证等法定义务的；  （三）无正当理由不出庭应诉，也不委托相应的工作人员出庭的；  （四）出庭应诉人员无正当理由未按时出庭或者未经法院许可中途退庭的；  （五）拒绝履行或者无正当理由拖延履行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和调解书，被人民法院强制执行的；  （六）无法定事由未全面履行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和调解书的；  （七）不依法及时处理司法机关司法建议，不整改本部门、本单位存在的违法行政问题的；  （八）应当提起上诉、申请再审的案件，拖延或者怠于履行提起上诉、申请再审职责，导致国家蒙受重大损失的；  （九）其他违反本规定的行为。  第三十五条 国土资源主管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规定，在行政应诉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六条 国土资源主管部门参加行政赔偿诉讼活动，国土资源部办理国务院裁决案件的答复事项，参照本规定执行。  第三十七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